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20 선고 2018가단536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2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,125,630,331원과 그중 1,038,831,397원에 대한 2018. 7. 1.부터 2018. 10. 24.까지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인택

별지